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001947-01

www.me.go.kr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2023. 9.



환경부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2023. 9.



환경부

목 차

들어가는 말

-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 환경목표는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249개의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였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161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은 기업현장·지자체 환경규제 업무 담당자부터 환경규제 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 I. 주요 개선사례는 현장사례를 통해 환경규제 개선 효과를 설명하였고, II. 추진과제 목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이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I 주요 개선사례 05

II 추진과제 목록 25

- ①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27
- ② 탄소중립 전환 촉진 35
- ③ 순환경제 구현 44
- ④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57
- ⑤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65
- ⑥ 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77

<참고> 현황 및 담당부서 95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주요 개선사례



01 화학물질 관리

1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간소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22.7월)

- 기 존**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시 9개의 시험자료를 생산 또는 구매하여 제출
- 개 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나, 다른 화학물질 합성에 사용하는 물질(중간체) 등은 시험자료 9개 중 2개를 생략하도록 하여 기업의 등록 부담을 완화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다수 취급하는 A사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전에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나, 9개의 시험자료를 생산하는데 물질당 약 34백만원이 소요되어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물용해도가 1mg/L 미만이거나 중간체·공정속도조절제 용도로 쓰이는 경우 시험자료 2개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A사는 물질등록에 드는 비용의 2/3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27 1번 과제

01 화학물질 관리

2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반도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 반도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도입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22.12월)

기 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업종 등 취급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장 적용 및 설치검사에 어려움 발생

개 선 반도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반영한 취급시설 기준 마련

B사는 반도체 생산설비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설비는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며, 생산설비 내부의 배관 재료, 내압시험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산설비 내부검사를 위한 개폐시 설비의 품질 보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을 반영한 제작요구서에 따라 제작되어 국제인증을 받으면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검사 부담 경감과 검사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B사는 화학안전은 담보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기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28 9번 과제

01 화학물질 관리

3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 '23.10.4.)

기 존 영세사업장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 이수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종료 예정(~'23.12월)

개 선 교육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 5년 연장(~'28.12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보관)하고 있는 C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술인력 기준이 엄격*하여 영세한 C사업장은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 / 기사자격증 취득+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

현재까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을 통해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23.12.31)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자격기준 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28.12.31) 되면 인력확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추진과제 목록 p.31 18번 과제

02 탄소중립 촉진

1

친환경 감축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이 확대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22.12월)

기 존 친환경 원료(바이오납사) 활용 및 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부재

개 선 온실가스 감축 인정 대상을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모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포함)로 확대

D사는 그간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납사(Naphtha)를 이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납사(Bio-Naphtha)의 혼합사용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감축을 인정함에 따라 D사는 친환경원료 사용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II. 추진과제 목록 p.36 9번 과제

02 탄소중립 촉진

2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국내 전환이 용이해졌습니다.

☑ 해외 감축 실적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22.12월)

기 존 해외 감축사업(CDM)의 경우 UN에서 인증받은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다시 심사함에 따라 기업 부담 가중

개 선 제출서류·검토항목을 간소화하고 해외사업 우선 검토, 관장기관-환경부 동시 검토로 소요 기간 최소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E사는 국제공인기관의 등록 및 감축실적 인증이 이루어졌음에도 국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심사를 위한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통과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UN에서 인증받은 감축실적(CDM 사업)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때 검토 항목을 '국내기업의 참여 여부 및 참여비율(20% 이상)'으로 간소화하고, 최초 감축실적 인증 신청일부터 관장기관과 총괄기관(환경부)이 동시에 검토하여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35 3번 과제

03 순환경제 구현

1

커피박(커피찌꺼기)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11월)

기 존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필요

개 선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발전연료,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

20대 F씨는 최근에 재활용(업사이클링) 프로젝트로 개발된 화장품을 샀다.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이용해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한다. 그간 커피박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카페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여긴다는 뉴스를 봤었다.

이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22.3)이 가능해지면서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버려지는 커피박은 '12년 이후 7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는데, 재활용되면 온실가스 감축(1t 폐기시 338kg의 이산화탄소 배출)에도 기여하고, 재활용 사업장에 따르면 재활용에 따른 상품 판매수익도 상당하다고 한다.

II. 추진과제 목록 p.44 2번 과제

03 순환경제 구현

2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가 완성됩니다.

☑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11월)

기 존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연료로만 사용 허용

개 선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 노력해온 G씨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벽부터 시설을 운영하여 생산한 열분해유의 용도가 한정적이어서 보일러 연료나 자체 열원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용도가 다양해졌다. G씨는 진정한 순환경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 힘쓰기로 다짐했다.

II. 추진과제 목록 p.46 11번 과제, p.48 23번 과제

03 순환경제 구현

3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으로 신기술·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22.12월 / 시행 '24.1월~)

기 존 자원순환 신기술·신산업이 각종 폐기물 규제(폐기물처리업 허가, 재활용 유형·기준 등)로 인해 활성화 애로

개 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신설

※ (규제샌드박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혁신의 실험장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EU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인 H사업장은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는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안전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규제 영향 분석 및 규제 정비할 수 있게 되고 순환경제 신제품도 적시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혁신적인 순환경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H사업장과 같은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이 실증특례 사업비와 책임보험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II. 추진과제 목록 p.46 13번 과제

04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1

환경영향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파평산단 환경영향평가 1/3 기간 단축, 2.3천억 투자 가능

(사전컨설팅 및 기존자료 적극 활용, '22.10월)

기 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재검토를 위한 변경협의 진행에 장시간 소요

개 선 사전컨설팅 지원 및 주변 산업단지 조사결과 활용으로 기간 단축(1년→4개월), 재검토 결과 유치업종(8개→18개) 및 배출제한업종 등 변경

I씨는 파주에 파평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 예정인 70개 업종의 입주가 무산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수치가 높게 나와 이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원천적으로 입주하지 못한다는 협의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근의 포름알데히드 수치와 비교하여 왜 파평산단만 튀는 수치가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환경부에 건의했더니 변경협의를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문제는 통상 변경협의를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금리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무엇을 조사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빨리 완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근 산단 등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의까지 4개월 만에 완료되어 예상보다 기간이 1/3로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24년까지 2,3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II. 추진과제 목록 p.57 2번 과제

04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2

지역축제의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합니다.

☑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 평가 합리화

(공문 발송, '22.12월)

기 존 지자체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매년 하천점용허가(일시)를 받아야 하고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매년 반복 실시

개 선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기간 (n년간)을 설정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지자체 J군은 지역민의 놀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해 9월경 K강에서 꽃축제를 개최한다. 방문객의 편리함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면적이 넓어 축제 개최시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예산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해 받을 필요 없이 5년마다 한번 받으면 된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일시적·반복적인 지역축제에 대해 사업기간을 정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면, 정해진 사업기간 내 소규모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약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추진과제 목록 p.58 7번 과제

05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1

숲속 야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합리화

(적극행정, '22.9월)

기 존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으로 선정하나, 유사 사업인 자연휴양림 등은 실질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

개 선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개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50대 직장인 L씨는 25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땅을 샀다. 6만㎡ 규모의 숲속야영장을 운영해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포부였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시작부터 장애물을 만났다. 숲속 야영장을 만들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에서 운영 중인 산림욕장은 같은 규모임에도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알아보니 야영장은 평가 기준을 전체부지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산림욕장 등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건축물 설치 등 실질개발 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비용과 평가서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L씨의 노후 인생 목표였던 숲속 야영장 운영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

II. 추진과제 목록 p.59 9번 과제

05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2

LNG 사용시설 관리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 LNG 사용시설의 대기 자가측정 제도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12월)

기 존 LNG 사용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도시가스사업에 따른 품질검사에서도 황함유량을 분석하여 중복 관리

개 선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에 LNG(가스) 포함

용인에 거주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N씨는 매년 서류 관리에 골치다. LNG보일러 3대를 운용하고 있다보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진행하고, 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황함유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진행한 후 각각의 결과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자가측정 준비를 하던 중, N씨는 측정대행업체로부터 '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LNG사용시설도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가측정 결과를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된 서류 관리 문제의 해소는 물론이고 자가측정 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N씨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II. 추진과제 목록 p.68 15번 과제

06 현장애로 해소

1

무라벨 먹는샘물의 날개 판매를 허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입니다.

☑ 무라벨 먹는샘물 날개 판매 허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22.12월)

기 존 무(無)라벨 먹는샘물은 포장 겉면에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날개판매'는 불가)

개 선 먹는샘물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활용 시, 날개 제품도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

40대 직장인 M씨는 평소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해 마신다. 편리해서 좋지만,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라벨을 떼어내야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벨이 없는 생수를 발견하고 병뚜껑에 있던 QR코드를 찍어보니 제품정보가 이미지로 나왔다. 원래는 제품정보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미지는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어 수원지나 미네랄 함량 등 제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분리수거가 편리하고 비닐 쓰레기가 줄어들어 M씨는 앞으로도 무라벨 생수를 구입할 계획이다.

II. 추진과제 목록 p.82 23번 과제

06 현장애로 해소

2

현장 전문인력의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취득을 지원합니다.

☑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취득방식 다양화

(「수도법」 개정 '23.8월 / 시행 '24.8월~)

- 기 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는 1~3급 모두 시험검정형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무경험은 많으나 시험 준비가 어려운 현장 근로자의 자격 획득 애로
- 개 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중 3급(실무자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과정이수형 자격방식을 도입

일반수도사업자인 O자치단체는 하루 수돗물 생산량이 5천m³ 이하 정수장 3곳, 1만m³ 이하 정수장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자격 보유자 4명, 2급 자격 보유자 1명이 필요하나 자격시험 대상자가 대부분 공무원 또는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이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자격 취득이 어려웠다.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다행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자격 취득방식으로 과정이수형이 도입('23.8.16. 「수도법」 개정, '24.8.17. 시행)되어 자격증 취득 인력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실무능력도 배양할 수 있어 정수장 운영관리의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79 11번 과제

06 현장애로 해소

3

통합허가사업장의 권리의무승계 처리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통합허가사업장 권리의무 승계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적극행정 및 유권해석, '22.7월)

- 기 존**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을 인수(합병, 양도 양수 등)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신·증설 등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이 되나, 시설 인수전에는 다른 사업자의 시설이므로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곤란하여 사전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
- 개 선** 권리의무승계로 배출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사후(1년이내) 변경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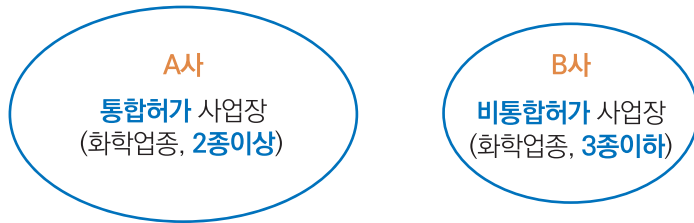
통합허가를 완료한 P사(화학업종)에서 동일 부지내에 위치한 동일 업종의 Q사(3종 이하, 대기법 허가 사업장) 흡수합병을 계획 중이다.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인수하는 경우 신·증설에 해당하여 인수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 대상인 사업장도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 적정하게 운영 중인 사업장임에도, 변경허가를 완료하고 인수·합병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경영의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타 사업장의 배출시설 정보가 담긴 공정도, 연·원료 사용량 등 사업장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II. 추진과제 목록 p.82 20번 과제

'22년 7월 환경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권리의무승계 이후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가 기업 부담은 덜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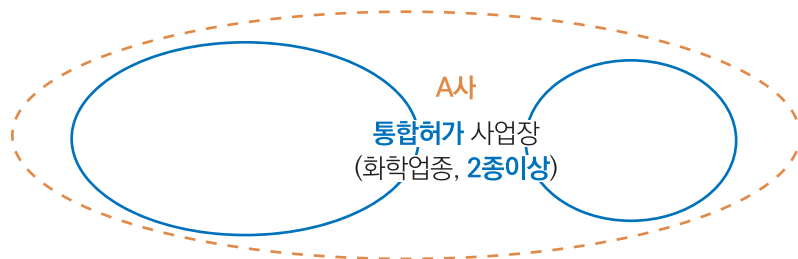
[전]

동일 사업부지



[후]

동일 사업부지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II

추진과제 목록

- ①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32개) ... 27
- ② 탄소중립 전환 촉진(36개) 35
- ③ 순환경제 구현(53개) 44
- ④ 환경영향평가 내실화(25개) 57
- ⑤ 국민체감형 규제개선(40개) 65
- ⑥ 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63개) ... 77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완료 과제 (20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간소화 완료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인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 9개 항목의 시험자료 제출 필요	물용해도 1mg/l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 조절제 용도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 유해성 2개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29.)
2	연구개발용 소량 신규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 완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과 고유번호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 첨부시 면제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작성 생략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29.)
3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시 시행일 유예 기간부여 완료	유독물질 지정고시일로부터 즉시 시행	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완료(22.10.6.)
4	정광·광물 형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기준 조정 완료	정광·광물을 마대자루 등으로 포장한 경우 일반형, 변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반 가능	밀폐형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 덤프트럭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 운반 허용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2.12.12.)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밸브 기준을 타법과 일치 완료	안전밸브 설치 면제는 안지름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만 가능	용기의 폭, 높이,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도 안전밸브 설체 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타법령 기준과 일치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4개 고시 개정 완료(22.12.12.)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	「위험물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운반용기 검사 면제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용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와 「화관법」의 기밀시험 이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화관법」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3개 고시 개정 완료(22.12.12.)	
7	「고압가스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칸막이 기준 준수로 인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방파판이 설치된 운송차량도 「화관법」에 따른 칸막이 설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액화요동방지장치(방파판) 기준에 적합한 운송차량은 「화관법」에 따른 칸막이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2.12.12.)	
8	가열·건조 설비의 직화 금지 예외규정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 가열·건조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가열 또는 건조설비에 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정(정련, 카드뮴제조, 비철금속 제조 등)은 예외로 허용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2.12.12.)	
9	반도체·항만에 특화된 시설기준 도입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기준은 취급특성을 미고려	취급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시설기준 확대
		「반도체 제조, 항만 시설기준 고시」 제·개정 완료(22.12.15)	
10	철강재 사용도로 용도제한 유예	’23년부터 크롬(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탱크 방청도로 및 페인트 용도로의 취급을 제한	대체물질 적용에 따른 옥외폭로 시험 등 취급제한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적용 시기를 2년 연장(’23.1.1→’25.1.1)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부칙) 개정 완료(22.12.2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관련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 확대	반도체 제조업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대상은 전자직접회로 제조업(2611)만 해당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에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 추가
		유권해석 안내(22.12.22.)	
12	국제적으로 기 평가된 물질의 유해성 자료제출 부담 완화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되어 공개된 경우 유해성 자료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나, 면제를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 입증 자료 제출 필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중 유해성 자료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국제평가완료물질 및 자료제출 면제 범위 공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22.12.29., ’23.2.21.(재공지))	
13	승인받은 살생물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제조·판매 유예	’22년까지 승인된 살생물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이 유예됨. 살생물제품의 승인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 유예기간(’24년)내 제품유통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유통 금지를 우려	승인받은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 제품이지만 제품승인 계획이 없는 업체에 대해 제품승인 미신청사유서 제출 시 ’24년 12월까지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22.12.30.)	
14	화학물질 양도시 정보 제공범위 합리화	화학물질 양도시 양수자에게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중 → 혼합 화학물질 양도시 개별 물질에 대한 등록·신고번호가 제공되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성분·함유량 노출 우려	비공개 승인받은 화학물질명, CAS 번호 등이 화학물질등록번호로 인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등록번호 비공개 처리 허용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2.12.3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5	「화평법」 변경 등록대상 명확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모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변경등록 대상인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명확화
		「기존화학물질 등록 실무가이드」 개정 완료('23.1.20.)	
16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설치검사기준 마련	연구실은 소량취급, 다양한 연구장비(반응기, 분석기기 등)의 신설·변경이 잦아 가동 전 설치검사 이행시기 모호	연구장비의 잦은 도입 등 취급 시설 특성을 반영, 연구실의 가동 전 설치검사 대상을 명확화
		「유권해석 및 연구실 검사기준」 해설서 마련('23.1.27.)	
17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 개선	종전 화학물질 대체명칭(총칭명) 작성방법은 미국·EU에 비해 영업비밀 보호 효과 부족	혼합물 제품 양도·양수 시 구성성분에 대해 EU 총칭명 작성법 허용 등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 (혼합물) 공급망 내 정보전달 시 혼합물 성분에 대한 총칭명을 EU 지침에 따라 작성 가능 * (고분자화합물) 혼합물 전체의 유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구성요소)가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도 총칭명 허용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완료('23.5.26.)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8	영세사업장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규정 유효기간 연장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명시된 기술인력 영입이 어려우나 적용 제외 규정의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만료('23.12.31.)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상 기술인력 자격완화기준 유효기간(~'28.12.31.) 연장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0.4.)	
19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확대	화공, 산업안전, 가스 등 일부 자격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공통으로 다루는 유사 자격(표면처리·정밀공업 화학자격 등)까지 폭넓게 인정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0.4.)	
20	안전교육 효과 제고	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안전교육을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함(16시간)	화학물질 관리 이론과 실무 경험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취급 전·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이수시기 개선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0.4.)	

01

화학안전

02

탄소중립

03

수질환경

04

환경오염평가

05

국민건강

06

환경안전

참고

진행중 과제 (12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small>진행중</small>	급·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에 시설기준 등 「화관법」 상 규정을 확일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계 부담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으로 구별 지정하고, 유해성·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 형태·수준 등 차별화
		「화평법」 개정중(국회발의, '23.8.16.) 「화관법」 개정중(국회발의, '23.8.18.)	
22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small>진행중</small>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며,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의 관리 대상으로 중복 규제 적용	제도 간 중복 해소 및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화관법」 및 「폐관법」 개정 ① 「화관법」 관리대상에서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업 제외, ② 「폐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 보완, ③ 화학사고 대응 등 「화관법」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 적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3.8.4.~'23.9.15) 「화관법」 개정중(국회발의, '23.8.18.)	
23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일원화 <small>진행중</small>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화관법」 자체 점검(매주)과 「연구실안전법」 일상점검(매일)을 중복 실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일상점검 대상 연구실은 「화관법」 자체점검 면제
		「화관법」 개정중(국회발의, '23.8.18.)	
24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완화 <small>진행중</small>	국제적 수준보다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0.1톤)으로 산업계 부담	‘화학안전정책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1톤)으로 조정
		「화평법」 개정중(국회발의, '23.8.16.)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small>진행중</small>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여부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은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 마련
		「화관법」 개정중(국회발의, '23.8.18.)	
26	유해성 정보의 생산·전달·활용 체계 개편 <small>진행중</small>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엄격하나, 생산정보의 종류와 활용은 제한적	‘화학안전정책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마련
		「화평법」 개정중(국회발의, '23.9.20.)	
27	고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합리화 <small>진행중</small>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상대 물질을 보관하는 실내 보관 시설에는 환기설비 설치 예외 허용하는 방안 마련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 ('23.12. 예정)	
28	국외 화학물질 수입업자 부담완화 <small>진행중</small>	국외 제조·공급자가 화학물질정보를 누락·허위 제공하더라도 책임소재·처벌은 국내 수입자에게 한정	국외 제조·공급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 전 화학물질의 확인 및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신설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중 (연구용역 추진, '22.11.~'23.9.)	
29	「화평법」 유해성 자료 비대상물질 정보제공 간소화 <small>진행중</small>	화학물질 양도시 유해성 자료 비대상 물질도 등록·신고번호 기재로 영업 비밀 노출 우려	화학물질 양도시 유해성 자료 비대상 물질의 경우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토록 허용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8.25.~'23.10.24.)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0	금지물질 허가사항 정보 공유 <small>진행중</small>	금지물질(60종)을 취급할 경우 환경부 허가 및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함	금지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허가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공유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허가사항 통보, '23.10.4.)	
31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 개선 <small>진행중</small>	시험자료 제출 생략요건 입증 시 국외 공개자료 구매비용 발생, 기존 화학물질 대상으로 중소기업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국외 공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출처만 제출토록 하여 자료구매 비용 경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포함하여 확대 추진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24.상반기)	
32	열분해유 등 재활용물질 화학물질 등록면제 기준 구체화 <small>진행중</small>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재활용물질이 공급망 내에서 이미 등록된 경우는 등록 면제	재활용물질 등록면제 기준을 구체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24.상반기)	

☑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33개)	1, 2, 3, 10, 14, 15, 17, 18, 21, 23, 26, 31, 32	화학물질정책과 (6772)
	4, 5, 6, 7, 8, 9, 11, 16, 19, 20, 22, 24, 25, 27, 28, 29, 30	화학안전과 (6841)
	12, 13	화학제품관리과 (6807)

완료 과제 (32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감축 목표합리적 설정 <small>완료</small>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리적 설정 필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11.)	
2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합리화 검토 <small>완료</small>	제3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상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합리화 필요	상쇄배출권 발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차 계획기간('26~'30) 인정한도 확대 검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23.6.22., 총괄분과 5차 회의)	
3	해외감축 실적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small>완료</small>	해외 감축사업(CDM)의 경우 UN에서 인증받은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 기업 부담 가중	제출서류·검토항목을 간소화하고 해외사업 우선 검토, 관장기관-환경부 동시 검토로 소요 기간 최소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4	통신업종 최적가용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요청 <small>완료</small>	업종별 최적가용기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설정 또는 업종별 인정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필요	최적가용기술(BAT)을 배출효율 상위 10%로 구체화하고, BAT 판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5	신증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 완화 <small>완료</small>	신증설이 아닌 고효율 설비로 교체시 추가할당 필요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배출 원단위를 일정 수준 이상 개선함으로써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설 시설 인정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	배출효율 기준(BM) 적용 대상 사업장 내부감축실적 인정 <small>완료</small>	BM 할당 대상도 GF 할당 대상과 동일하게 감축실적만큼 차기 할당량 산정에 반영 필요	BM 할당대상업체 추가할당 고려 시 BM 할당시설 또는 사업장의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배출량 산정토록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7	열분해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small>완료</smal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탄소배출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요청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원료 사용 등으로 감축실적 발생 시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既 개정(21.12),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승인
		제43차 배출량인증위원회 감축방법론 승인(22.3.29.)	
8	굴 패각 원료 사용 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제외 <small>완료</smal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매스 혼소 이외 굴패각 등을 원료로 사용해 감축활동 중이나, 이에 대한 인정 및 지원제도 부재	굴패각을 가공하여 CO2 성분이 없는 가공물(CaO)만 원료 등으로 사용 시 배출량 제외 가능
		제도시행사항 안내(22.11.1.)	
9	친환경 감축 기술 적용 인센티브 부여 <small>완료</small>	석유화학업계 감축 기술 중 친환경 원료(바이오납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산정 지침에는 감축 기준이 명확히 없는 상황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10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범위 확대 <small>완료</small>	현행 배출량 산정 제외 대상 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만 규정되어 있어 바이오매스의 경우 감축실적으로 미인정	온실가스 감축 인정 대상을 모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포함)로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기준 마련 <small>완료</small>	폐기물 감량, 재활용, 바이오가스 활용, 바이오플라스틱 보급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인정 기준 마련 요청	폐기물 감량·재활용, 바이오가스 활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은 이미 등록되어 있어 내·외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외부사업 방법론 기 등록사항 안내(22.11.1.)	
12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 효율 측정주기 합리화 <small>완료</small>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 관련 해외는 샘플링 규격이 합리화(美:35%/5년)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측정 다(100%/5년)	국제기준에 맞게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대상 합리화* * 전체 설비의 연 20% → 연 10%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22.12.30.)	
13	폐기물부문 배출량 할당 체계 개선 및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지원 <small>완료</small>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굴뚝 자동 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폐기물소각시설 등 온실가스 직접 측정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마련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 완료(22.11.25.)	
14	배출량 산정 계획서 검증 절차 개선 <small>완료</small>	계획기간 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이 필요해 불필요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	측정방법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활용토록 개선, 연 2회 보고의무를 → 연 1회 동시제출로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15	열 사용 간접배출량 산정 관련 지원 필요 <small>완료</small>	배출량 산정 시 열(스팀) 공급업체의 경우 많은 업체가 연동되어 있어 배출량 오류 시 과도한 행정비용 및 인력 낭비 발생	배출계수 산정 오류로 인한 기업의 행정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량 보고(3월) 이전 사전 컨설팅 실시(~2월)
		열(스팀) 공급업체 대상으로 배출계수 개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완료(23.1.~2.)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6	배출권 총당부채 현실화 방안 마련 [완료]	회계 결산기준(연말)과 배출권 제출 기한(차년도 6월) 간 차이로 초과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전까지는 배출 부채로 남아있는 문제 발생	일부 구매량에 대해 결산기준 도달 이전 부채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배출권 사전제출(12월 말) 허용방안 마련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2.12월~)	
17	시장안정화조치 시행기준 개선 및 세부기준 공개 [완료]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이 정부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시장 상황에 따른 발효기준 및 시행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업체 예측가능성 하락	가격·물량 등 발동 요건별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가이드라인」 수립(23.7.27.)	
18	배출권 가격 예측 정보 공유 강화 [완료]	배출권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가격 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업체 담당자는 적절한 배출권 매수·매도 시점을 알기 어려움	기업의 합리적인 배출권 매매 시기 결정 지원을 위해 가격정보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장내·외 가격정보 공개 확대 및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23.2.~)	
19	배출권시장 유동성 확보 및 가격 안정화 [완료]	배출권시장 거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미비 등으로 거래 활성화 제한,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연속 상·하한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부재	배출권거래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방안 설계를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 개선방안 마련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가이드라인」 수립(23.7.27.)	
20	증권사 배출권 한도 증액 [완료]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보유한도가 20만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거래 활성화가 어려움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보유한도 상향(20→50만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보유 한도 변경 알림(22.11.24.)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1	CDM '다' 유형 감축량 인증기준 개선 [완료]	외부사업 지침에서 인정하는 4가지 해외 CDM 사업 유형 중 '다' 유형은 감축실적 인증 비율 산정 시 국내기업 참여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범위를 통일토록 개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22	해외 CDM 사업 감축실적(CER) 국내 감축실적(KOC) 전환 기한 유예 [완료]	'20년말까지 해외 CDM 사업에서 발행된 CER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인증을 위해서는 '22년 말까지 신청이 필요하나 현재 절차 중단	정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한 연장(~'23.末) *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치국 입국 불가 등
		외부사업 승인·인증 관련 안내(22.11.24.)	
23	인증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및 감축사업 방법론 증빙자료 상세기준 마련 [완료]	외부 감축사업 인증신청 시 관장기관 사무국 담당자에 따라 방법론 해석 기준이 상이해 승인 지연사례 발생	관장기관 검토결과와 환경부 협의의견이 달라 인증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 검토의견을 유형별로 공개하여 검토기준 일관성 제고
		「외부사업 검토 사례집」 제작·배포(22.12.5.)	
24	감축실적 인증이 중단된 UN CDM 사업 외부사업 신청 절차 마련 [완료]	파리협정 이후 국가 간 상응조정에 대한 국제사회 규칙이 미확정되어 '21년 이후 발생한 감축실적 미발급 중	활용이 중단되어 있는 UN 등록 외부사업(CDM 사업) 중 국가 간 상응조정이 필요없는 국내 사업은 활용 허용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25	외부사업 심의기한 제도화 필요 [완료]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절차는 소요기간이 길고 승인 보류가 다량 발생하여 활용가능성이 낮은 상황	현재에도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 요청 후 33일 이내에 부문별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 중에 있음
		제도시행 사항 안내(22.11월)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6	배출권거래제 교육 확대 완료	제도 초기에 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교육이 많이 축소되어 기업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요청	할당업체 대상 배출권거래제 운영 교육 정례화 추진
		배출권거래제 운영 교육 정례화 추진('23.1월~)	
27	배출권시장 참여 연회비 면제 완료	배출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연회비가 할당량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50~100만원) 중으로, 소규모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	거래횟수,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체에 대한 연회비 면제방안 검토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 ('23.3.14.)	
28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요청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상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가 '22.12.31.까지로 되어 있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필요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25.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22.12.23.)	
29	중소·중견기업 공통 절감기술 지원 완료	탄소중립 관련 정부 지원정책이 대규모 R&D 및 대형업체 위주로 □ 중소기업에 대한 공통 온실가스 절감기술 개발 및 설비 지원 필요	중소·중견 할당업체 대상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 중이며, 향후 사업선정 시 기업규모별 점수 차등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현행) 중소 10점, 중견 8점 → (개선) 중소 10점, 중견 7점, 공시대상 중견 4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완료('22.12.8.)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0	물류업체 특성 및 운영 현실을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소통 강화 완료	배출권거래제 운영 시 다배출업종 대비 교통·물류부문 간담회 등 지원사항이 미흡한 실정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산업계 협의 채널 운영 시 물류업종 참여 지속 추진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교통 등 물류) 회의 개최('22.9.28.)	
31	혁신기술 R&D 투자, 혁신 펀드 조성 등 기후대응기금 활용방안 제고 완료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으로 다배출 업종에 대한 혁신기술 개발 및 신기술 투자 지원 확대 필요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신설('22년~), 탄소중립 R&D 및 저탄소 기업 금융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배출권 할당업체 지원방안 다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감축 지원방안 검토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22.7.~'23.5.)	
32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확대 완료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교체비 지원 중	기존 중소·중견기업 지원('22)에서 유상할당 대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2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을 유상할당 대기업까지 확대·선정 ('23.2.~9.)	

01	탄소중립
02	탄소중립
03	신기술
04	탄소중립
05	온실가스
06	온실가스
참고	

진행중 과제 (4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3	명세서 검증 적합성 평가 및 추가검토 간소화	배출량 적합성 평가 시 과도한 증빙자료 요청 및 추가검토로 행정비용 및 인력 낭비 발생	배출량 산정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IT 기반의 배출량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화평가 도입, 주요시설에 대해서만 심층평가 하도록 배출량 인증체계 개편 추진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배출량 산정 기능 고도화 예정('24.~)	
34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	배출량 확정 이후 차입/이월 신청기한 등이 촉박하여 짧은 기간 내 거래 집중으로 배출권 가격 등락폭 심화	시장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이월 차입/이월 신청 기한 연장(10일 →90일)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3.1월~), 「배출권거래법」 개정중(국회발의, '22.12.6.)	
35	배출권 위탁매매 허용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대상 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배출권거래법」 개정중(국회발의, '22.12.6.)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6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저해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감축 투자 유인 제고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 개최('23.9.13.), 개선방안 마련중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37개)	1	기후전략과 (6643)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기후경제과 (6582)

완료 과제 (32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small>(완료)</small>	순환자원 인정기준(법률 2, 시행령 9)이 엄격하고 인정절차(60~120일)가 복잡하여, 순환자원 인정비용 낮음	시행령 2개 기준(소각·매립 제외, 인정 용도로 사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30.)			
2	식물성잔재물(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유형 확대(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small>(완료)</small>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필요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발전연료, 벽돌 등 영업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3	재활용 환경성 평가제도 활성화 <small>(완료)</small>	재활용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업의 어려움 상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4	폐기물처리 시설 신증설 적극 허가 <small>(완료)</small>	일부 지자체가 민원 등을 이유로 법률의 위임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제기	지자체 조례·지침 조사 후 부적절 조례·지침 개정 요구 및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규시설 허가 및 기존시설 증설 적극 허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지자체 조례·지침 점검 및 4개 지자체 정비 완료(22.11.~12.)			
5	재활용 제품 제조 규격화(인화점 기준 완화) <small>(완료)</small>	페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 시 재활용 기준 미비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로 제조시 재활용 기준에 인화점 제외 등 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실적 인정 범위 확대(전기전자제품 제조 시 재활용 실적 인정 확대) <small>(완료)</small>	다양한 종류의再生资源원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再生资源원만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으로 인정	폐전기·전자제품뿐 아니라 모든再生资源원(합성수지류)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여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22.12.30.)			
7	중간가공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규제 완화 <small>(완료)</small>	중간가공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타인명의 임시차량 이용이 불가하며,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생산자책임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중간가공한 경우에도 수집·운반차량 발급의무 적용	타인명의 임시차량에 대한 수집·운반차량 발급 허용 및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 수집·운반차량 발급 의무 폐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1.29.)			
8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를 위한 지정·고시제도 도입 <small>(완료)</small>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18~)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환경청장에게 순환자원 인정 신청시 인정·기준절차가 복잡하여 업계 부담	환경성·경제성이 높은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先 인정·고시하고, 後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
「자원순환 기본법」 전부개정 완료(22.12.31.)			
9	신규품목 폐기물 여부 신속판단 <small>(완료)</small>	기술개발 및 급속한 산업 발달로 인해 신규물질은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함에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즉시 뒷받침되지 못함에 따라 신규물질의 활용 지연 및 제한 초래	신규 품목의 폐기물 여부를 신속 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쳐 즉시 결정) 후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즉시)
유권해석 안내(22.12.3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0	포집된 이산화탄소 폐기물에서 제외 완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이산화탄소스트림(51-36-01)”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이를 재활용 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 애로	용기에 담긴 이산화탄소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가스(공장 굴뚝 이후)에서 포집된 경우 폐기물에서 기 제외(유권해석)
		유권해석 안내(22.12.31.)	
11	열분해시설 재활용시설로 분류 완료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은 화학적 재활용시설이나 현행법상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어 설치·관리 기준 등이 엄격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을 개정하여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열분해시설을 추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을 개정하여 폐플라스틱으로 석유화학제품 원료(열분해유) 제조가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29.)	
12	폐배터리 재활용 폐기물 규제 제외 완료	폐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활발한 실증연구 등이 진행중이나,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어 민간시장 활성화에 제약 발생	순환자원으로 인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30.),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완료(22.12.31.)	
13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완료	자원순환 신기술·신산업이 각종 폐기물 규제(예 : 폐기물처리업 허가, 재활용 유형·기준)로 인해 활성화 애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완료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22.12.3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4	재활용 대상 분담금 지원 확대 완료	플라스틱 중 일부만 재활용(57%)되고, 나머지 잔재물은(43%)은 시멘트 소성로로 투입되거나 단순 소각·매립	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할 경우 EPR 지원단가 및 인정사업물량 확대
		재활용지원금 단가 상향(23.5.4.)	
15	철스크랩 공급부족 대응 순환자원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완료	철 스크랩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순환자원화 촉진 지원 필요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30.)	
16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허용 및 지자체 구매노력 부여 완료	재생원료는 원재료 대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한계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홍보 수단 및 공공조달에 따른 안정적 수요 확보
		「자원재활용법」 개정 완료(23.3.28.)	
17	공공선별장의 선별설비 자동화·현대화 지원 완료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지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자동선별설비 등 시설 현대화 지원
		'23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완료(22.12.26.)	
18	버섯폐배지 재활용 유형 확대 완료	버섯폐배지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필요	유지제품,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순환경제
04	환경오염방지법
05	도시채광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9	배출자 변경신고 간소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해당 시,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 필요	상호, 소재지 및 처리계획 변경 등 폐기물 변경이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 의무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20	왕겨 및 쌀겨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 의무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 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필요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 의무 대상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21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수집운반업 허가, 밀폐형 압축, 압착 또는 암롤 차량 필요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하고,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22	사료용 쌀겨 폐기물 제외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관리	사료용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23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유형 확대	오염, 이물질 혼입으로 단순 소각·매립되는 페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미비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유형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재활용은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방식(R-9-4)만 허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유기성 물질은 열적 처리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재활용 유형(R-9-3)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25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폐유, 폐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 부재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26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확대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대기환경기사 및 화공기사 등이 포함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자격기준에 시험과목이 유사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27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개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 가능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용출독성 제외)에 대하여 시험분석 가능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28	폐의류의 재이용 활성화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폐의류를 단순 선별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 유형(R-1-1) 및 재활용신고자 기준 부재	폐의류(생활폐기물) 재활용 유형(R-1-1)을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에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포장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수출하는 자를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01

환경정책기본법

02

간소화사업

03

수집운반체계

04

폐기물처리인력

05

국민참여

06

환경정보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9	유기성 오니 발전연료 사용 제한 폐지 완료	유기성 오니의 발전소 연료 사용시 사용 가능량이 총 연료 사용량의 5%로 제한되어 재활용 확대 곤란	「폐기물관리법」 별표 5의3을 개정하여, 유기성 오니의 발전소 연료 사용량 제한 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30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완료	폐목재 폐기물 분류의 경우, 재활용 인허가, 배출자 배출신고, 환경부 통계 등에서는 대·중·소 분류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폐기물 분류코드에서는 소분류는 구분하지 않음	폐기물 분류 코드만으로도 폐기물 분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간소화(기존 14개에서 7개로 간소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31	편의점에서의 나무젓가락 사용 허용 완료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종합소매업)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불가하여 국민 불편함 야기	편의점(종합소매업)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허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19.)	
32	세척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완료	페트병 몸체에 인쇄된 잉크가 재활용공정시 세척 가능여부와 무관하게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분류되어 분담금 기중 부과 등 애로	페트병 라벨 중 몸체와 같은 재질에 열알칼리성 분리잉크 사용하여 인쇄하는 라벨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상향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개정 완료('23.4.14.)	

진행중 과제 (21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3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허용 진행중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을 제외한 모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미용·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 불가	기술발전에 따라 폐치아·폐지방의 활용도 및 경제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을 허용 * '15.1월 '치아 활용 골이식재 가공 기술'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20.8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리기기 실증' 착수 등 *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성 측면 우려 해소를 위해 폐지방 활용 시의 경제성·유효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
		「폐기물관리법」, 「생명윤리법」, 「인체조직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개정중 ※ 폐지방 활용 실증사업 진행 (규제자유특구, '19.8~'23.8월)	
34	이산화탄소 전환탄소화물 재활용 유형 신설 진행중	CCUS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포집물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산업·건설 소재 등으로 재활용 곤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3]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허용유형 범위 확대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2.8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35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기반 마련 진행중	국내 매립지 부족, 재활용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국내 범용적 활용 추진에 제한	국내 재활용 체계 편입이 어려운 제품군에 대해 플라스틱 사용을 집중하여, 해당 제품군 내 시장 실적을 통해 해외 진출 확대 추진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6	제품 포장 간이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과대포장하지 않도록 포장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을 지켜야 하나 다양한 형태의 제품 포장이 존재하여 포장별로 측정방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현장애로 발생	제품포장 간이측정방법에 관한 해설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택배 포장방법에 관한 간이 측정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과대포장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수행('22.12.~'23.8.), 과대포장 간이 측정방법 해설서 마련(~'23.12.)	
37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기차 폐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연구사업 등으로 매각 또는 무상제공 가능하여 연구목적 수요에 대한 폐배터리 공급이 부족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기술 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중	
38	화학적 재활용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준 마련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인증 기준 미비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진행
		순환경제를 위한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 중(KEI, '23.2.~11.)	
39	열분해 기술 R&D 지원·시설 확충	공공열분해시설 '22년 4개소 추진	공공열분해시설 '23년 2개소 추진 예정
		공공열분해 시설 추진 지자체 대상 간담회 등 지속 추진('23.3월~)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0	비닐류 선별 설비 등에 대한 확충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지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지원('22~)
		'23년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사업 대상 선정('22.12.23.)	
41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구축-DB구축 방안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처별 기능에 따라 분산관리	배터리 제작(산업부), 등록·운행·탈거(국토부), 재활용(환경부), 재제조·재사용(산업부) 등 DB를 연계하여 통합 운영
		DB 구축방안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예정	
42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배터리 내부제어 시스템 정보 공유방안 마련	충방전 방식에 의한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대당 8시간 가량 소요	배터리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성능평가 도입으로 대당 30분으로 단축
		배터리 내부제어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22.11.24.~'23.10.31.)	
43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술 R&D지원	사용후 배터리 진단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중	사용후배터리 진단·평가 기술 고도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R&D 과제 추진중('22~'24)	
44	사용후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민간기업별 재활용 기술에 대한 실증지원 체계 부재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실증,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운영방안 용역 발주('23.6월) 및 조성사업 착공('23.7월, '25년 상반기 완공 예정)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5	폐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 진행중	평판형 폐LED 조명은 재활용 회수율이 저조하여 EPR 대상의 효과가 작고 업체의 부담 가중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평판형 폐LED 조명 EPR 대상에 제외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3.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3.1.17.~'23.3.8.)	
46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대상 작성방법 개선 ▶ 진행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내용을 관리대장에 날짜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 부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내용의 작성기한을 매월 말일 기한으로 작성토록 개선 * 月 단위 관리로 작성시 업체부담 감소 (2시간/日 → 4시간/月 소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47	폐기물 매립시설 상부토지를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이용 확대 ▶ 진행중	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 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하며, 매립 시설 상부의 토지이용 용도를 제한	최종복토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토지이용 가능 용도 확대
		폐기물 매립시설 상부토지이용 확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 ('23.4.~10.)	
48	폐기물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재활용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와의 참여제한 개선 ▶ 진행중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재활용 업체외에서는 활용이 불가능	탄산화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모든 업체에서 활용가능하도록 개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9	소각열 회수율 감면기준 개선 ▶ 진행중	소각열 회수율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은 회수율 50% 이상부터 3단계로 감면하고 있으며, 사업장비배출시설계는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요율을 적용	소각열 회수율 감면기준을 확대 (30% 이상부터) 및 세분화(6단계)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적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50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요건 개선 ▶ 진행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는 사업자는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을 1대 이상 구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 구비할 수 있도록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51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진행중	위반행위자가 동일 위반행위로 타법상 제재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중제재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52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 진행중	재활용 기업은 재활용원료가 되는 폐배터리, 공정스트랩 등의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보관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애로	원료확보차원에서 보관기준(보관량, 처리기한)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에서 180일분 이하로 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8.4.~'23.9.15.)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순환경제
04	환경오염방지법
05	토지이용규제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3	폐의류 폐기물규제 면제	폐의류가 폐기물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련 친환경 사업발전 한계	유해성 低·경제성 高 등 기준 충족시 순환자원으로 인정·지정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 대상품목 및 세부기준 마련중	

진행중

☑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53개)	1, 8, 9, 10, 12, 13, 15, 20, 21, 22, 31, 35, 36, 37, 48, 49, 51, 53	자원순환정책과 (7350)
	17, 28, 40	생활폐기물과 (7424)
	2, 3, 6, 7, 14, 16, 18, 25, 26, 27, 32, 33, 34, 38, 41, 42, 43, 44, 45, 52	자원재활용과 (7367)
	4, 19, 30, 46, 47	폐자원관리과 (7369)
	4, 5, 11, 23, 24, 29, 39, 50	폐자원에너지과 (7401)

완료 과제 (14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환경영향평가 소통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생태우수지역, 심각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 등은 평가서 보완요구 등 장기간 소요에 따른 협의 기간 지연사례 발생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사업 중 심각한 환경영향 우려 대규모사업에 대해 협의 완료 전 협의기관,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소통협의체를 운영하여 환경영향 규모, 심각 정도, 저감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신속한 협의 추진
		사전 컨설팅 추진('23.2.기준, 육상풍력 48건, 해상풍력 77건) 협의-검토기관 간 조정회의 개최('22.7.19., 7.26.)	
2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제도 활성화	평가준비서 작성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서 작성시 적정 타당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구체적인 평가항목·범위 제시하고 누적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조사
		안내서 제작 및 배포('22.3.) 및 스코핑 제도 활성화 대책 수립('22.10.)	
3	환경영향평가 인접·유사지역 조사 자료 이용 활성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줄여야 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질이나 생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함	사업자의 불편 최소를 위해 환경조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인접 지역 및 유사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항목·범위 등을 제시하여 보완 기간을 단축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정보 제공 기능 강화(지속)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역량강화 포럼 실시('22.1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	재해예방사업 평가 제외	재해예방 목적의 항구적 기능 복구나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추가 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재해 대응에 한계	긴급한 재해예방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개정(22.12.27.)	
5	환경영향평가 검토체계 개선	지난 5년간(16~20년) 기관별 검토현황은 KETI 검토건수가 가장 많고, 그 외 과학원 등 검토 기관과 큰 차이가 있어 검토체계 효율화 필요	평가서등 검토체계 효율화 위한 기관 간 검토업무 조정(과학원 기능 강화 등)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처리 규정」 제정 완료(22.6., 과학원) 환경영향평가 검토체계 개선방안 시행중(23.1월~)	
6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실시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협의(환경보전방안을 마련, 사업계획 반영) 실시	변경협의 시 직전 협의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변경협의 실시 기준 완화 및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20.)	
7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 환경영향평가 합리화	해당 지자체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매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매년 반복 실시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기간(n년간)을 설정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개선방안 마련 및 지자체, 협의기관 공문 발송(22.12.)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	산지개발 시 평균경사도 관련 규제개선	①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5도 이상(5m×5m) 지역의 면적이 40% 이상인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 검토 ② 경사도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10m×10m)과 달라 행정절차 추진 시 애로	골프장 중점 평가 규정 중 경사도 측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개정(5m×5m → 10m×10m)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6.19.)	
9	소규모 평가 제외대상 확대	①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유사 사업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은 실질 개발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 ②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지하매설물 설치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제하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숲속야영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 면적으로 개선 ②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01	환경영향평가법
02	산지관리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농어촌도로정비법
06	도시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0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간소화 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자 부담 발생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서류를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에 포함하여 협의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11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 완료	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 증가, 일정 기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환경영향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재협의 실시	재협의 대상 규모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으로 적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12	환경영향평가 약식평가 확대 완료	환경영향이 비교적 작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식 절차로 평가 진행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약식평가 절차로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13	환경영향평가 조정요청 제도 도입 완료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과의 의견제시 보장 미흡	협의의견 통보 전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의견 통보 후에는 조정여부 결정을 위한 독립적 조정위원회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4	환경영향평가 총괄조정회의 활성화 완료	협의기관-검토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협의가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검토·협의의견 통보시 사업자의 불만 증대 우려	협의-검토기관 간 의견충돌이 있거나, 주요 검토사항이 누락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의견 조정 등으로 필요시 협의기관-검토기관과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총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율
		협의업무 처리 규정 개정 완료('22.12.31.)	

01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02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0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0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
0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0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참고	

진행중 과제 (11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5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small>진행중</small>	계획·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업내용의 특성 고려없이 동일한 평가 절차 진행	사업내용, 지역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추정,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중(국회발의, '23.3.30.)	
16	환경영향평가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small>진행중</small>	EIAS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모바일 웹서비스 이용시 편의성 저조	평가 원문 조회, 사업 정보 등 기존 데스크탑 웹(WEB) 기반으로 제공되던 EIASS 서비스를 모바일 웹(WEB)으로 확장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개정('23.2.) 모바일 서비스 시범운영(~'23.11.) 대국민 서비스 제공('23.12월 예정)	
17	긴급 재난대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small>진행중</small>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는 평가 등이 제외되나, 한정된 사업범위, 관련 행정절차 등으로 대응에 한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평가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중(국회발의, '23.6.30.)	
18	도시정비사업 등 조례평가 이행 <small>진행중</small>	현 제도는 소규모 평가와 지자체 조례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소규모 평가를 실시	지역별 다양한 특성·여건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 중복 시 조례평가 이행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중(국회발의, '23.6.5.)	
19	재협의 기준 합리화 <small>진행중</small>	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 증가, 일정 기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환경영향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재협의 실시	평가협의 후 5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재협의 여부 판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중(국회발의, '23.3.3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0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small>진행중</small>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되어 10,000kW 이상 규모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0,000kW로 완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3.8.25.~10.4.)	
21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합리화 <small>진행중</small>	동일한 내용의 하수도 사업임에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추진방식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반영된 하수도사업일 경우 '민투자법'에 근거한 민투자사업일지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3.8.25.~10.4.)	
22	전략평가 이의신청 절차 신설 <small>진행중</small>	전략평가 협의내용 반영 곤란 사유가 있을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미흡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3.8.25.~10.4.)	
23	소규모 평가 면제 대상 확대 <small>진행중</small>	전략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친수지구내에서 공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추진시 소규모 평가 대상	친수지구내 사업으로서 오염배출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3.8.25.~10.4.)	
24	전략평가를 거친 하천정비사업 환경평가 면제 <small>진행중</small>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하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시되고 환경영향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협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01
02
03
04
05
06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5	과도한 보완 요구 이의신청 절차 도입 진행중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조정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마련중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25개)	4, 6,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국토환경정책과 (7271, 7280)
	1, 2, 3, 5, 14, 16	환경영향평가과 (7301, 7296)

완료 과제 (31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적산전력계 검침값 입력으로 해소 위한 규제 개선 완료	아날로그 적산전력계 이용 시 현장검침 필요하나, 설비 간 거리가 멀어 모든 설비를 매일 동일한 시간에 검침(원격검침을 위해 디지털 타입으로 변경 하는 경우 상당한 예산 필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소규모(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적산전력계 의무 부착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22.5.31.)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간소화 완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상위 등급(1등급) 인증이 90%를 넘어 2등급 이하 등급 세분화 실효성 부재	1등급은 유지하되, 2·3등급 및 등급 외는 하나로 통합하여 2단계로 구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31.)	
3	중소중견기업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부담 완화 완료	대기3종 이하 배출구(연 20톤 미만 배출)는 '22.12.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가 필요하나 시설개선 필요 등의 사유로 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시설 다수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를 거쳐 일정기간 TMS 부착을 유예 조치 * '22년 말까지 부착대상 배출구(352개) 중 281개 미부착
		미부착 대상시설 유예 신청 확인 후 부착 유예 통보('22.8.31.)	
4	대기배출 허용기준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조건 정비 완료	대기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시 공정 특성상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시설은 예외 인정, 관련 규정의 적용 업종 확대 필요	공정 특성상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에 관한 합리적 규정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보게재('22.12.28.)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	전기차 구매시 국비보조금 별도수령 허용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급 중이나,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 별도 수령 불가	법인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 별도 수령 허용 마련
	완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완료(23.2.13.)	
6	자동차 온실가스 중복규제 해소	자동차 환경성 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제작사 대상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및 소형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시행 중이며 미달성 제작사에 각각 기여금과 과징금을 중복 부과 *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 부과(22년 저공해차 20%, 무공해차 8~12%) **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판매 유도	보급목표제 기여금과 온실가스·연비 과징금을 중복 부과받는 자동차판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금 감액범위를 설정하고 세부감액수준을 고시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27.)	
7	보조금 성능평가 항목 현행화 및 절차 간소화(보조금 성능평가 항목 등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급평가 절차 항목 간소화 요구	평가항목·기준에 대해 간소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완료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2.8.1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	플레어스택 배출 이중 규제 합리화	플레어스택은 배출가스의 불안 전연소 여부를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모니터링으로 확인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연소구간 발열량 기준도 준수하여야 하는 이중 규제 적용	플레어스택을 유해대기물질 배출여부에 따라 배출시 연소구간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배출시 광학가스탐지카메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완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8.16.)	
9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생략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검사 유효기간(3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조하려는 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항목 중 배출가스 검사의 소요시간 및 비용이 과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
	완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2.28.)	
10	벤조a피렌의 오염시험 결과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	대기오염물질 중 벤조a피렌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상 결과표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오염물질이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되더라도 “불검출”이 아닌 미량의 농도값을 표시 → 인·허가 과정 등에서 오해 소지	벤조a피렌 등 공정시험법상 결과의 표시 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해 결과의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완료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개정 완료(23.4.4.)	
11	친환경차 보급 중장기 목표 수립	산업계의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최소 2년)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중장기 보급목표 제시 필요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수립
	완료	보급목표제 차기(23~25년) 목표 확정(22.12.30.)	

01	국립환경연구원
02	국립환경연구원
03	국립환경연구원
04	국립환경연구원
05	국립환경연구원
06	국립환경연구원
참고	국립환경연구원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2	전기자동차 인증기준 및 제출서류 명확화 완료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의 배출 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전기차의 경우 인증 기준 및 관련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큼	전기차 인증기준 및 관련 제출 서류 목록 명확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7.4.)	
13	전기동력 건설기계 보조금 확대 완료	전기굴착기 신규 구매 시 구매 보조금이 지속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무)공해 건설기계 정의 신설 등 지속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완료(22.12.27.)	
14	전기이륜차 기타형 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완료	전기이륜차 기타형 차량 종류에 따른 소비자 금액은 달라지지만,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이륜차 형태에 따른 제조원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전기이륜차 규모,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체계를 개편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발표(23.3.28.)	
15	LNG 사용시설의 대기 자가측정 제도 개선 완료	LNG 사용 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사업 품질검사에서도 황 함유량 분석하여 중복 관리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연료의 황 함유 분석표로 같음’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 LNG(가스)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2.28.)	
16	전문정비 사업자 신규 전문기술인력 직무교육 기한 연장 완료	위탁 교육기관의(권역별 선정된 대학)의 교육 일정이 4~11월에 편중되어 있어 기한 내 교육 미이수자 발생	신규 전문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2.28.)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7	비산배출시설 시설기준 적용 예외 조건 명확화 완료	비산배출시설이 고장, 정비 등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도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고장, 정비 등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을 통해 시설기준 적용 유예하도록 규정 보완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 완료(23.3.21.)	
18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개선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사·파생모델 기준 없음 ② 처리기간의 정확한 표시 필요 ③ 인증변경에 대한 기준 불명확 ④ 영문인증서에 대한 수요 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사·파생모델 범위 신설 ② 처리기간의 정확한 표시를 위한 성능인증 신청서 개정 ③ 인증변경 기준의 명확한 조항을 위한 개정 ④ 영문인증서 양식 신설, ⑤ 성능검사, 점검주기 등의 사후관리 조항 하위법령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6.8.)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6.29.)	
19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활성화 완료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 보급 제약으로 관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 마련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발표(23.3.28.)	
20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시기 조정 완료	택배차·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3.4.3)에 앞서 대체차량(전기·LPG 등) 출시가 미흡	관련 기관과의 8차례 간담회로 택배차·어린이통학차량 사용제한 시기를 대체차량 출시 시기로 조정(24.1.1) * LPG 택배차 '23.12~', 전기 어린이통학차 '23. 하반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23.3.28.)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1	해상해안 국립공원 한시적 허용시설 확대	해상해안 국립공원 4개소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탐방객 편의 시설 등 일부시설은 한시적으로 허용(연간 4개월)하고 있으나,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어 최근 캠핑 욕구 증가로 늘어나는 야영장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여 해안·섬지역에서 탐방객의 편의 제공 및 생활밀착형 국민 불편 해소 ※ 적극행정으로 조기시행 (22.6.17 공문시행)
	완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1.)	
22	하천구역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허용	가축의 방목·사육행위는 하천점용허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설치에 제한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개)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 는 하천점용허가 금지의 예외로서 허용
	완료	「하천법」 개정 완료(23.1.3.)	
23	자연경관심의 대상 합리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심의	하천 유량, 이·치수 등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에 위한 것으로,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에서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 적인 하천정비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제외 확대
	완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14.)	
24	주유소에 회수-액화 통합시설 설치 허용	① 주유소 발생 유증기가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회수시설 의무화 → 회수된 유증기는 정유사 등으로 가져가 액화 후 재활용 ② 신기술로 회수-액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발하였으나, 현재 회수-액화 통합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애로	회수-액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기술 융합설비의 주유소 내 설치 허용
	완료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식인증 검사 신청 안내(22.8.23.)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5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 허용	부산 에코델타시티내 기업(리노공업)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주차장을 설치하려 하나, 해당 지역은 철새생태습지 친수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옥상주차장 설치 불허	옥상주차장 설치 허용
	완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실시계획 변경 고시」 완료(23.3.30.)	
26	유어장(遊漁場) 설치절차 간소화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유어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공원계획 변경,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 이행에 따른 민원발생	공원시설에서 제외, 행위허가 사항(10일)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완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1.)	
27	어촌·어항 시설의 보수·개량 사업의 합리적 개선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빈번한 보수개량이 있으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어촌주민의 공원구역해제 등 민원발생	시설 및 면적증설이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신고사항으로 전환
	완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1.)	
28	공원 주변 기반시설 설치대상 확대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나,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한	공원구역 경계 인근주민도 기반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범위 확대 허용
	완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1.)	
29	「자연공원법」 신고제도 합리화	공원관리청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신고민원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 규정
	완료	「자연공원법」 개정 완료(22.12.13.)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0	「자연공원법」 허가 간주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징수허가를 받도록 규정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허가여부 또는 연장여부를 통지토록 하고, 기한내 미허가(미연장) 시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
		「자연공원법」 개정 완료('22.12.13.)	
31	실험동물 「야생생물법」 수입허가 대상 제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농림부 허가 및 「야생생물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 허가절차 추가이행 의무 발생	적극행정 운영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야생생물법」에 따른 중복 허가절차 제외(적극행정 운영 알림 공문 발송, '22.11.4.)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6.9.)	

진행중 과제 (9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2	댐건설사업 수익자 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합리화	댐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 부과는 고정 정액 방식으로 규정되어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가산금 총액을 부과함으로써 단기·장기 연체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산금 산정방식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
		「댐건설법」 개정중(국회발의, '22.9.2.)	
33	댐 건설사업 시행자의 토지 출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 출입·사용 등 위반 행위시 부과하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은 타 법령상의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벌금형)과 비교시 과도	댐 건설사업시 토지출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형)이 아닌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
		「댐건설법」 개정중(국회발의, '22.9.2.)	
34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재인 초순수 생산을 해외에 의존,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무역분쟁 등 리스크 대응을 위해 생산기술의 국산화 시급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25)
		실증플랜트 구축('22.11.30) 및 운전 가동('22.12월~) 실증플랜트 생산 초순수의 수요처 공급 개시('23.5월~) 실증플랜트 추가 구축(1,200톤) 및 수질·성능검증 완료 예정(~'25년)	
3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시험 절차·조건 일원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전조건 등에 대한 공동고시보다 「환경부 고시」가 보수적으로 규정	「환경부 고시」를 공동고시와 동일하게 개정
		환경부 고시 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6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의 국제기준 조화	휘발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 방법(고정체적, 가변체적) 중 고정체적 산출식만 인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소화된 측정방법(가변체적)이 인정되지 않아 혼란 유발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방법 포함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방법 포함 예정 (~'23년) [진행중]	
37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자동차 제작자는 판매하는 차량에 부여된 평균온실가스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달성해야 하나 자동차 제작자의 평균온실가스 에너지 소비효율 달성 실적(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애로	자동차 제작자에 평균온실가스 에너지 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고시 개정안 마련중 [진행중]	
38	지질공원의 인증 폐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지질공원을 인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인증이 아닌 지질공원 선정을 위한 다른 방식의 법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자체가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
		「자연공원법」 개정안 마련중 [진행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9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인증신청시 제출서류(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등) 과다 사후관리 요건을 인증기관(환경산업기술원) 내규로 규정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심의위원회 삭제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인증신청시 서류제출 간소화 사후관리 요건 보완 필요(상향 입법 검토)
		온라인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23.2월)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마련중 [진행중]	
40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는 신청서 접수(지원 자격 확인 목적), 지원 가능 확인 요청(대상자 선정 목적), 보조금 지급 신청 등 총 3차례로 구분 →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혼선 야기	최초 신청 시 지원 자격 및 대상자 선정을 동시 검토하는 등 지급 절차 간소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 [진행중]	

01	환경정책기본법
02	간소화된 규제
03	심화규제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40개)	2, 18	대기환경정책과 (6877)
	5, 6, 7, 11, 12, 14, 19, 40	대기미래전략과 (6890)
	1, 3, 4, 8, 10, 15, 17, 24, 39	대기관리과 (6910)
	9, 13, 16, 20, 35, 36, 37,	교통환경과 (6922)
	32, 33	수자원정책과 (7619)
	22	하천계획과 (7717)
	25	수자원관리과 (7653)
	34	물산업협력과 (7638)
	31	생물다양성과 (7249)
	21, 26, 27, 28, 29, 30, 38	자연공원과 (7318)
23	자연생태정책과 (7232)	

완료 과제 (32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원상 복구계획서 제출 간소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자(민원인)는 시공업체에 원상복구계획서 작성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 비용부담 발생	원상복구계획서에 표준화된 원상복구 유형을 선택하여 내용을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5.30.)	
2	생분해성 제품 인증기준 다양화	생분해성 제품 인증기준(환경표지 인증 EL 724*)에서 생분해 조건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으로 한정 * 임의인증으로 인증시 녹색제품 포함, 폐기물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 온도 58℃, 18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	상은 일반 토양에서 지속 사용되며 회수 곤란한 제품*에 대한 생분해 조건** 인증기준을 마련(22.9)하고, 해양/수계 환경의 인증기준도 마련(23년 이후) * (예) 농업용 멀칭, 묘목포트 등 ** 온도 20~28℃, 24개월 이내 90% 이상 생분해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완료(22.12.29.)	
3	개인하수처리 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는 PE·FRP 재질의 제품(시설)에 대하여 재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별력이 낮고, 시험방법 재현 곤란, 효용성이 낮은 검사항목으로 인해 검사 지연 및 검사수수료 부담 가중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 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해야 함(「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강도, 수밀성 등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재질 검사 기관 및 성능·재질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완료(22.11.28.)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	수질오염물질 저감계수 현실화	통합허가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저감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해외 저감계수(영국 모델)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현실 반영 부족	국내에 적합한* 수질오염물질 저감계수 마련 및 대상 물질 확대(23개→36개)로 저감효과 추가 인정 * 국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현장 실측조사 결과 반영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완료(22.12.7.)	
5	통합관리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 절차 개선	통합관리사업장의 변경허가 때마다 환경관리 수준평가* 의무로 기업에 부담 *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수준 등 4개 평가분야에 따른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도록 개선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완료(22.12.7.)	
6	통합관리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완화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정할 수 있으나, 관련 기준이 없어 적용 곤란	환경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정비, 우수사업장은 점검주기 완화(최대 3년) 및 기업 자율환경관리 유도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2.10.7.)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 완료(22.11.23.)	
7	거점소독시설 폐수처리 방식 합리화	기타수질오염원인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처리방법이 위탁처리로 한정되어 처리 비용과다로 재정적 부담 발생 * 최근 ASF, AI 등 대응을 위한 폐수량 증가로 연간 약 200백만원 소요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 위탁처리 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다양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4.)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 방법 개선	석면해체작업은 실내작업, 실외 작업 등에 따라 석면 비산 가능성이 상이하나, 현행 제도는 측정 대상을 개별 사업장과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만 구분	석면 비산측정 대상 사업장을 실내-실외작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측정지점 및 방법 규정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 개정 완료(22.11.7.)	
9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기성 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은 에너지 잠재력이 크나 관련 제도 미비로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확대에 한계	공공·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으로 관련 산업 육성, 기술·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시장 조성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완료(22.12.30.)	
10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발적 안전 관리 활성화를 위한 처벌규정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은 「환경보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형벌에 처해짐	어린이용품 제조 기업 등이 자발적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안전기준을 초과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조치하게 될 경우, 형벌 감면
		「환경보건법」 개정 완료(23.8.16.)	
11	정수시설운영 관리자 취득 방식 다양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는 1~3급 모두 시험검정형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무경험은 많으나 시험 준비가 어려운 현장 근로자의 자격 획득 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중 3급(실무자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과정이수형 자격방식을 도입
		「수도법」 개정 완료(공포 '23.8.16.)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2	상생협력 현장실증 프로그램 운영	녹색혁신 기술·제품 수요처는 규제 우려*로 실증 요구, 공급 기업은 실증기회*가 없어 혁신 기술·제품 사장(死藏) 우려 * 실증을 위한 혁신 기술 제품 적용 으로 배출기준 초과 등 책임문제 우려로 실증 거부	녹색혁신 기술·제품 수요와 공 급 매칭·지원으로 수요기업에는 경쟁력 제고, 공급기업에는 실 증실적 확보 기회 제공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 개정 완료(22.12월)	
1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대상 확대	창업 이후 3~7년에 자금·경험 부 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확률 이 높으나 창업 3년 이후의 재창 업자이거나 창업 실패한 전력자 는 환경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 타트업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재창업자 의 신청요건 완화(3년→7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침」 개정 완료(22.12.27.)	
14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서류심사 동시 진행	신기술 인증 완료 후 기술검증 을 진행하여 인·검증에 장기간 소요됨, 이에 따라 신속한 혜택 제공에 한계 및 신청기업 업무 부담으로도 작용	한번의 서류심사*로 신기술인증 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인·검증 절차 간소화 * 우수성(신기술 인증항목), 현장평 가계획(기술검증 항목)을 같은 서 류심사 단계에서 동시평가
		「환경기술 인증 평가절차 규정」 개정 완료(23.4월)	
15	브랜드 인증 도입, 변경 수수료 면제	단순 색상, 디자인 차이도 추가 제품으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 고, 인증내역 변경 신고 시 신청 수수료 부과	다양한 디자인, 색상을 보유한 제 품을 1개 기본모델로 통합·관리 하고, 인증내역 변경에 대한 신청 수수료 면제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완료(22.12.2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6	통합허가 사업장 최대배출기준 합리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최 대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시설개선 부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물환경 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 * '가'지역 기준 → '나'지역 기준(ex) TOC 50→75)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2.8.)	
17	TMS 생물감시장치 등 증설 협약조건 명확화	특대 II 권역에 한해 기존공장의 증설은 조건부(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자동측정기기 부착, 취 수·방류량 제한 등 환경부 협의) 허용 중	TMS 생물감시장치 활용방안 구체화하고 외부재이용수 활용 시 취수방류량 제한에서 제외하 여 재이용수 활용 증대
		특대고시에 따른 증설조건 협의사항 변경 완료(22.12.)	
18	통합허가 시스템과 기존 매체 업무의 중복 개선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운 영·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 스템과 기존 시스템(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대기), 수질오염원 조사시스템(수질), 전국오염원 조사시스템)에 중복 입력 불편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수질오 염원조사시스템의 공통입력항 목에 대한 DB간 정보연계
		(대기) SEMS 데이터 중 통합허가시스템 필요 항목값 연계(22.9월~.) (수질) IEPS 수질 배출량을 항목 WEMS 시스템에 전송·연계(23.5월~)	
19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사후신고 절차 신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새로 운 오염물질 배출시 사전 변경 신고 의무가 있으나, 원로나 공 정 등의 변경 없이 원인불명의 새로운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미리 변경신고 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곤란	원료, 첨가물 및 공정 등의 변경 이 없었으나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새로운 수질오염물 질 배출이 적발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4.)	

01
02
03
04
05
06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0	통합관리 사업장 권리의무승계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small>완료</small>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 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을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 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신·증설 등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이 되나 시설 인수전에는 다른 사업자의 시설이므로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곤란하여 사전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	권리의무승계로 배출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사후(1년이내) 변경허가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2.7월~)	
21	통합관리 사업장 한계배출기준 유연성 확대 <small>완료</small>	'15년 이후 설치한 시설과 동일 사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환경 저감 성능을 가진 '15년 이전 시설은 유연한 한계배출기준 부여 불가	'15년 이전 설치한 상당한 저감 효과가 있는 시설도 유연한 한계배출기준 부여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2.7월~), 통합관리 대상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 완료('22.11.7.)	
22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항목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small>완료</small>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항목에서 해당 물질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프탈레이트 금지 범위 불명확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항목 해당 물질을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로 명확하게 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완료('22.12.29.)	
23	무라벨 먹는샘물 날개 판매 허용 <small>완료</small>	무(無)라벨 먹는샘물은 포장 겉면에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판매'만 가능('날개판매'는 불가)	날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도 무라벨 QR코드를 표시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완료('22.12.3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4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임시폐수 배출시설 허용 <small>완료</small>	특대지역 내 도로·철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에만 임시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특대지역 내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터널공사 시에도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 완료('23.6.2.)	
25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 명확화 <small>완료</small>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기기를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여야 함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야 하는 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삭제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및 현장 애로 해소
		「4대강 수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13.)	
26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 부과 <small>완료</small>	기술 진단 전문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영업정지 시 주민 피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완료('23.6.28.)	
27	수질 TMS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small>완료</small>	초과 판단기준은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 - 수질악화 판단 기준이 너무 짧아 사업장의 대응 어려움 - 단발성 초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회피를 위해 약품 과다투입 등 사례 발생	초과 판단기준을 24시간 평균치 1회로 변경 - 일시적인 돌출농도에 의한 데이터 왜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측정값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준 합리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4.)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토지관리법
06	환경오염방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8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련 사후신고규정 마련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사전신고만 가능 - 시설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의 경우 행정절차 상 변경신고의 증빙자료가 뒤늦게 마련되어 불편 야기	시설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는 변경 후 일정기간 내에 사후 변경신고 허용 * 변경 후 2개월 이내 / ** 변경 후 30일 이내
	완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4.)	
29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사무소 공유사용 허용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사무실을 타 영업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6.1.)	
30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허용업종 확대 및 준수사항 현실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km에는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나 ①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을 허용하되 ② 준수조건 부여	기존 허용업종과 유사하거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부품조립 공장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고,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차단·집수시설 설치 면제 * 병튀기 제조업, 단순 전자부품 제조업, 곡물제분업, 간판제조업
	완료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3.)	
31	첨단산단 지원반 운영	용수공급 계획수립 및 환경평가 협의시 지자체 인·허가 갈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사업지연 우려	관행을 뛰어넘는 과감한 핀포인트(pin-point) 지원 및 규제혁신으로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전담지원반 신설
	완료	「첨단산단 조성 통합지원단」 구성·운영('23.6월~)	
32	신기술 인검증시설의 검사항목 축소	환경신기술 인·검증 시설도 성능검사(3개 항목)를 실시	환경신기술 인·검증 및 성능 확인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성능검사 항목 축소
	완료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8.16.)	

진행중 과제 (31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3	하수 분뇨찌꺼기 성분검사항목 개선	찌꺼기 성분 검사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들로 규정	실 처리상황에 맞게 검사항목 정비 *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건조 등으로 처리
	진행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34	집수구 삽입형 IoT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분류항목 마련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여과형시설, 스크린형시설 등으로 분류 → 집수구 삽입형 시설은 자동역세척 기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성능검사 시 스크린형시설로 분류되고 단독 설치를 허용받지 못해 판매 애로 * 동 시설은 IoT센서로 모니터링하여 필터 자체를 교체하므로 자동역세척 기능이 불필요	비점오염저감시설 구조, 처리기작 등을 고려한 유형분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 개정안 마련
	진행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개정중	
35	제재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 양수인 보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영업 양·수도 등으로 인한 사업자 변경 시 양도인 등이 받은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	처분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개정
	진행중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중(국회발의, '22.12.27.)	
36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제재기준 합리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형벌이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경미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경우 과태로 조항 신설 등 경미한 위반 행위 행정제재 기준 합리화
	진행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중(국회발의, '23.4.13.)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7	토양정화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진행중]	토양정화업자가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사항 발생 시 영업 정지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애로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할 수 있는 과징금(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중(국회발의, '22.11.18.)	
38	건축자재 오염물질 관리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진행중]	실내용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 표지 부착의무가 있으나 단순 표지 미부착 사업자와 표지 무단사용 사업자를 동일하게 제재(과태료 최대 2천만원)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수준의 과태료 부과(최대 5백만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시행 예정('24.3.15.)	
39	「가축분뇨법」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진행중]	「가축분뇨법」은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이 최근 2년간 동일 위반 행위 여부로 규정되어 타법(통상 1년) 대비 과도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을 1년으로 조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4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진행중]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	조문 정비 등으로 불합리한 처벌규정 등 개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중	
41	규제·의무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행중]	중소기업은 인력 한계로 환경안전관리 규제준수 및 ESG 관련 동향에 적기 적정 대응 곤란	영세업체가 스스로 환경법령·ESG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지원
		환경안전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23.5월), 시스템 구축예산 반영 등 추진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2	녹색산업 관련 31개 시스템 통합 [진행중]	사업별로 다수의 시스템이 난립하고 시스템간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사용자(환경기업, 연구자 등)의 불편함 증가 ※ '20년 국민참여 예산과제	분산된 31개 시스템을 유사 사업별로 통합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시스템 통합 2차 구축 중('23.3.~12월)	
43	녹색분류 체계에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포함 검토 [진행중]	열분해 외 기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투자 시 애로 *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등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대해 기술발전 추이를 보아가며 환경 영향, 자원순환 기여 등을 고려해 추후 녹색분류체계 개정(매 3년)시 포함 검토
		녹색분류체계 개정 검토중	
44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 등 확충 [진행중]	일부 기초데이터는 없었으며, 나프타 등 일부 데이터는 20년 이상된 노후 데이터임	노후데이터는 최신데이터로 개정, 없었던 기초 데이터는 제정
		탄소배출량 정보 DB 구축중('23.3.~12.)	
45	사용후배터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개선 [진행중]	배터리(이차전지)의 재활용 물질 함량 정보 확인하지 않음	배터리(이차전지)의 재활용 물질 함량(%)을 부가적인 환경정보로서 표시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중(~'23년)	
46	사용후배터리 원부자재 기초정보 DB확충 및 탄소배출량 평가 기법 개발 [진행중]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일반제품) 및 해외 LCI DB 활용하여 탄소배출량 평가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업계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지침 마련
		배터리 주요 원료물질 및 외장재질 LCI DB 개발 완료('22.12.) 「배터리(이차전지)의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중(~'23년)	

01
환경정책
02
탄소중립
03
수질환경
04
환경오염
05
국민체감
06
환경애로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7	친환경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생분해 일회용제품 인증 불가, 인증 사용료 부담,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조건 인증	생분해 일회용 제품 인증 유예(완료), 인증 사용료 감면(완료), 생분해 플라스틱 일반 토양조건(완료), 해양조건 인증기준(추진중) 마련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22.12.29.)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개정('22.3.21.) 「해양조건 인증기준」 개정중(~'24년)	
[진행중]			
48	LED조명 환경표지 인증 기준 합리화	LED 조명과 관련하여 환경표지 인증과 성능시험인증(KS, 고효율인증)이 유사항목을 운영 중 이나 환경표지 기준이 높게 설정	LED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타 인증(KS, 고효율인증)과 유사한 항목은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23.8.30.)	
[진행중]			
49	목재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 시험방법 이원화	'실내용 바닥장식재', 및 '벽 및 천장 마감재'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	목재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타법과 같이 소형챔버법 또는 데시케이터법로 가능 하도록 개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23.8.30.)	
[진행중]			
50	통합허가 사업장 방류수 내 불소 한계배출기준 합리적 설정	통합허가사업장이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입지와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청정지역의 불소 배출허용기준 적용 * 폐수내 불소 배출기준: (기준) 15mg/L → (통합허가) 3~15mg/L	청정지역 외 사업장이 불소에 대하여 한계배출기준(청정지역 수준 3mg/L)을 적용받는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수질 배출영향분석 모델링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과학원, '22.10.~'23.8.) 「통합관리 대상한계 배출기준고시」 개정중(~'23년)	
[진행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1	제재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 양수인 보호 (환경오염 시설법)	영업 양·수도 등으로 인한 사업자 변경 시 양도인 등이 받은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	처분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개정
		「환경오염시설법」 및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23.9.~'24.7.)	
[진행중]			
52	환경성적 표지인증 개선	① 국제환경규제 대응 불가 - 검·인증제도의 국제통용성 확보 필요 ② 인증실적 저조 품목군 축소, 생산재 위주 제품군 운영 ③ 인증심사위원회 폐지, 제경비 폐지 필요 ④ 유사파생모델 기준 無 ⑤ 현재 유효기간 3년 -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유효기간 확대 필요	① LCI DB 국제플랫폼 등록 ② 인증실적이 저조한 품목 축소 ③ 인증심사위원회 폐지, 제경비 폐지 ④ 유사파생제품 범위 확대 ⑤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등
		① LCI DB 개발 국제플랫폼(GLAD) 등록(159건, ~'23년) ②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고시 개정(안) 마련(~'23년) ③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고시 개정 추진(~'24년) ④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고시 개정(안) 마련(~'23년) ⑤ 유효기간 확대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23.6.~'23.11.)	
[진행중]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오염방지법
05	국민채광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 검사 개선	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시 유사파생모델 추가에 관련된 규정 없음 ②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규정, 정도검사의 검사 주기는 최초 2년, 이후 제품마다 1~2년의 주기를 적용하도록 규정 ③ 형식승인을 받은 모델이 환경부령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 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최초 형식승인과 같은 성능시험 실시) ④ 정도검사 증명서의 재발급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	① 일부항목만 검사하도록 유사 파생모델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재검토 필요 ②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폐지하도록 법 개정 ③ 변경신청 시 변경항목(이동형 장비의 경우)에 따른 중요도를 분류하여 필요한 일부 항목의 시험만 진행하도록 개정 검토하고,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제작사 등)의 변경에 대한 절차 개정 ④ 정도검사 증명서의 재발급 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선
		「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중(~'23년)	
54	정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기준 개선	고온의 소각시설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수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위탁처리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인허가 행정절차 부담 감소와 환경시설 중복 투자 해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5	환경표지인증 개선	① 인증마크 사용료 폐지 필요 ②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내구성, 안전성 등) 삭제 필요 ③ 일부 품목 인증실적 저조	① 인증마크 사용료 폐지 ②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삭제 ③ 인증실적이 저조한 품목 축소
		①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개정중(~'24년) ②, ③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23.8.30)	
56	자연재난(가뭄 등) 시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대형건 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 의무有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물 절약을 위해 저수조 청소의무 유예 가능토록 제도개선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중(~'23년)	
57	수도꼭지 제품(EL. 221) 환경표지 인증기준 폐지	현재 수도꼭지 제품(EL. 221)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KS·KC인증 기준과 유사하나,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업 부담	수도꼭지 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EL. 221)을 폐지하여 기업 부담 경감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23.8.30.)	
58	액비 살포기준 관련 규제 합리화	액비 살포 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나 하우스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로터리작업 곤란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은 액비 살포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수 있도록 허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중(~'23년)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9	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대상에서 제외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 5m³/일 이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	조개류, 갑각류 등과 유사한 수산물 단순 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중(~'23년)	
60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	(기술인력) 기술직 2명 이상, 기능직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 다기능표준음발생기, 표준음 발생기, 마이크로폰 등 7개 장비	(기술인력) 기술직 1명 이상, 기능직 1명 이상 (시설 및 장비) 다기능표준음발생기를 제외하고 표준음발생기, 마이크로폰 등 6개 장비 기준으로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중(~'24년)	
61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 시 1개 사업장 면적이 전체의 75% 이상 또는 배출오염부하량이 총 유입부하량의 80%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 사업 중, 2개 이상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 1개 사업장 면적이...·(중략)·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개정 추진
		「'24년도 집행관리 및 '25년도 예산편성지침」 반영 예정('24.1월)	
62	업종 특성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 제정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기준은 취급특성을 미고려	완제품, 모듈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3년)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3	산업공정 배출수의 재이용 허용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만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었음	가뭄으로 공업용수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급 가능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7.~'23.10.17.)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오염방지시설
05 대기환경보전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31	규제개혁법무담 (6395)
41, 43	녹색전환정책과 (6694)
2, 12, 13, 15, 22, 36, 44, 45, 46, 47, 48, 49, 52, 55, 57	녹색산업혁신과 (6712)
14, 42, 53	녹색기술개발과 (6672)
4, 5, 6, 16, 18, 20, 21, 50	통합허가제도과 (6717)
38, 60	생활환경과 (6801)
25	물정책총괄과 (7143)
11, 30	물이용기획과 (7127)
1, 23, 29, 37	토양지하수과 (7185)
17, 24, 28, 32, 34	물환경정책과 (7011)
7, 19, 27, 39, 40, 54, 58, 59, 61, 63	수질수생태과 (7071)
3, 9, 26, 33,	생활하수과 (7021)
10, 56	환경보건정책과 (6753)
8, 35, 51	환경피해구제과 (6803, 6813)
62	화학안전과 (6841)

참고

현황 및 담당부서

(현황) 총 249개 추진과제 중 161개 완료, 88개 정상 진행 중
(완료/진행, '23.9월말)

총 (249개)					
화학물질 관리 (32개)	탄소중립 촉진 (36개)	순환경제 구현 (53개)	영향평가 내실화 (25개)	국민체감형 규제 (40개)	기업 현장애로 (63개)
20/12	32/4	32/21	14/11	31/9	32/31

주요과제 담당 부서

구분	주요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044-201-****)
총괄	규제업무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담당관실	6395
기후·녹색 산업	탄소중립	기후전략과	6643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기후경제과	6582
	통합허가사업장 배출기준	통합허가제도과	6692, 6735
대기	친환경차	대기미래전략과	6846, 6882
	대기배출허용기준	대기관리과	6905, 6914
수질·수자원	수질오염방지시설	물정책총괄과	7152
	상수원보호수역·수변구역	물이용기획과	7116
	토양정화, 먹는샘물	토양지하수과	7177, 7184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수질수생태과	7068, 7079
자연	친수구역	수자원관리과	7658
	공원관리	자연공원과	7318
자원	환경영향평가	국토환경정책과	7271, 7280
	순환경제, 포장재 다회용용기	자원순환정책과	7350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폐자원관리과	7371
화학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허용	자원재활용과	7393
	화학물질관리, 유독물질 지정관리	화학물질정책과	6779, 6784
	취급시설기준, 기술인력, 안전교육	화학안전과	6837, 6832

※ 동 업무 핸드북 상의 과제 구분은 '23.9월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완료 여부 및 시행시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제별 담당자 연락처는 추진과제별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환경부